

의안번호	2210023
의 퇴 인	허성무 의원
회 답 일	2025. 4. 23.
추 계 번호	25F2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규정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1조의36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산업단지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근거 신설 - 감면율: 3년간 100%+ 2년간 50% ※ 단,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 투자누계액에 따라 감면한도 설정 - 적용기한: 2028.12.31.	
2	안 제121조의37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근거 신설 - 적용기한: 2028.12.31.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1조의36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21조의37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해당 지역국가산업단지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규정과 입주 기업이 해당 감면대상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규정을 신설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관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08)에 따르면 “지역국가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¹⁾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사업단지로서 지역균형발전과 고용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산업단지를 의미함
 -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미래자동차 등 첨단기술의 융합 등 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지역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된 것임
-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이 되는 지역국가산업단지의 내역과 해당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하나, 가용정보의 한계로 인하여 현시점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및 관세 수입의 감소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현재는 법인세, 소득세 및 관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발의만 되었을 뿐 국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법률 제정시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국가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과세자료 등을 특정하기 어려움

1)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등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